

춘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50871(본소), 2020나50888(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50871(본소), 2020나50888(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7가단539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최진규

피고, 피항소인B중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독립당사자, 항소인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독립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김신호, 한국일

변론 종결 2021. 10. 21.

판결 선고 2021. 12. 15.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7가단53909(본소),

2018가단561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 문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에 관한 청구취지 중 등기번호 제13053호 다음에 "13056호"를 추가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취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강원도 홍천군 L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을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강원도 홍천군 M"을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본소

가. 피고는 원고에게,

-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4. 11. 2. 접수 제13053호, 13056호1) 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1. 2. 접수 제130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의소

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4. 11. 2. 접수 제13053호, 1305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고는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1. 3. 30. 접수 제1958호, 1973. 4. 30. 접수 제309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4. 11. 2. 접수 제130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고는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1. 12. 13. 접수 제7690호, 1973. 4. 30. 접수 제309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면 "2. 인정사실 가.,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강원 홍천군 L 임야 2,129㎡(이하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 모두 강원 홍천군 BG 소재 임야이므로 이하에서는 BG까지의 주소 기재는 생략한다)에 관하여 1954.

6. 5. N, O, P 명의로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73. 4. 30. 접수 제3092호로 1973.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S, T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제1목록 기재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1. 2. 22. 접수 제1972호로 N, O, P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같은 등기소 1971. 3. 30. 접수 제1958호로 1971.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S, T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M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44. 3. 10. 접수 제1032호로 N, O, Q, R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같은 등기소 1971. 12. 13. 접수 제7690호로 1964.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S, T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AT에 관하여 1954. 5. 31. Q 외 3인 명의로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BK에 관하여 1954. 5. 28. Q, R, N, BL 명의로 회복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위 각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3. 4. 30. 접수 제3092호로 1973.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S, T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제1심판결 6면 12행부터 16행, 6면 하단 1행부터 7면 1행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7면 "2. 인정사실의 마.항" 기재 "BB"을 "BM"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면 "2. 인정사실의 아.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N의 상속인들이다.』

○ 제1심판결 12면 11행 앞에 "나) 보증서가 허위로서 등기추정력이 복멸되는지 여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3면 4행 "예컨대"부터 같은 면 5행의 "열렸다고 한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증인 AH은 AH의 부친이 위 부동산 중 일부를 피고 종종으로부터 소작받아 위토로서 관리하고 위 부동산에서 시제가 열렸다고 증언하였다).』

○ 제1심판결 13면 하단 4행 "(한편"을 "[한편"으로, 같은 면 하단 2행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을,

"원고와 독립당사참가인들은"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4면 4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임시총회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적법, 유효한 확정적인 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되는바(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794 판결 참조), 만일 1994. 6. 25.자 임시총회결의를 무효라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종중의 소유이고 그 당시 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약정상 내지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청구취지 중 등기번호 제13053호 다음에 "제13056호"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취지 중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제1심판결은 주문에서 경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취지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재판의 탈루로 보지 아니한다) 주문 제3항과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현정

판사조미연

판사김시원

별지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AC, AD, AF은 1994. 11. 2. 접수 제13056호로 마쳐진 등기인 바,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에 위 등기번호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다.